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저축銀, 신용공여한도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

-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, 자율구조조정 촉진을 포함하는 '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입법예고 함.
-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의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(BIS) 기준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함.
 - 아울러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(자기자본의 10%를 초과)의 총 한도도 현재 자기자본의 5배 이내이나 향후 10배 이내로 확대됨.
- 경영투명성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상호저축은행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(또는 필요에 따라) 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한편, 해당 저축은행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공여나 해당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는 금지될 예정임.
 -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의 제정·변경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,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의 '해임 및 징계 면직된 자'에서 '정직, 직무정지 등을 받은 자와 적기 시정조치 원인자'까지로 확대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함.
-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명칭을 단축하여 '저축은행'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,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이 허용, 수납지급대행과 인수합병(M&A) 중개·주선 등 부수 업무범위가 확대될 방침임.

(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, 10/24)